

지난 6월 30일 대통령 제 11,461 호로 "소방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으로써 소방법의 개정('83. 12. 30.)에 따라 시행상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도 곧 공포될 예정으로 있어 그간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용하는 데 다소 혼란스러웠던 점검업무가 이제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소방법 제 26조 제 2항에 정한 "수직강하식 구조대규정"이 '84년 7월 3일 내무부고시 제 7호로 고시되어, 여기에 위의 개정령 및 고시 전문을 게재한다.

1. 消防法 施行令中 改正令

제 2조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면적이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제 4조 제 1항제 1호 나목중 "학예전시관·공중목욕장"을 "학예전시관·사업장·공중목욕장"으로, "창고·차고 및 주차장으로서"를 "창고로서"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교회·사찰 및 사업장으로서"를 "교회 또는 사찰로서"로 하며, 동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인 이상인 것.

제 8조 제 1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청원소방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 11조 제 1항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층이상의 여관
4. 특수목욕장·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제 11조 제 2항제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카텐·암막·카페트·반자 또는 벽에 사용

하는 포지(실내장식용 직물류를 말한다)·식모벽지 및 침구류(시트카바 및 매트리스에 한한다)

제 11조제 5항중 "검사신청·검사방법·표지 및 방염처리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을 "검사신청·검사방법 및 표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 13조제 3항제 1호중 "피난교"를 "피난교·피난밧줄"로 하며, 동항 제 3호를 제 4호로 하고, 동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상조명등

제 13조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소화용수설비는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소화수조·저수지 기타 소화용수설비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 17조제 2호 다목중 "인 것."을 "인 것은 전층."으로 한다.

제 17조제 3호 가목중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를 "공연장 또는 집회장의 무대부분(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로 하고, 동호 라목중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을 "그 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으로 한다.

제 17 조제 3 호 "마"목과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 30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부분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제 17 조제 4 호 나목중 "발전실 및 변전실로서"

를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로 하며, 동조 제 7 호 다목중 "인 것"을 "인것은 전층"으로 하고, 동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제 17 조제 11 호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호텔·여관·음식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제 1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구 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경기장·집회장 및 유흥음식점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
나. 시장·호텔·종합병원 및 특수목욕장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다. ○전문음식점·다방·여관·기숙사 및 병원 ○가목 및 나목외의 제 1종장소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라. 과자점·여인숙·의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소형피난구유도등(또는 소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마. 기타의 제 1종 장소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

제 17 조에 제 13 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 2. 비상조닝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평방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

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기타의 통로. 다만, 경기장·기숙사 및 의료원의 거실을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그 바닥

면적이 450 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해당 층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통로

제 17 조제 1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설비	소화용수설비
가. 대지면적이 2 만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 층인 경우에는 1 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 층 이상인 경우에는 1 층 및 2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 만 5 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동일대지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 층에 있어서는 3 미터이하 2 층에 있어서는 5 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 개의 건축물로 본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건축법시행령 제 5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이 소방법령의 소화용수설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높이가 31 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이 2 만 5 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 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 18 조제 2 호 다목중 "인 것"은 "전층"으로 하고, 동조 제 3 호 나목중 "1천 500 평방미터 이상인"을 "1 천평방미터이상인"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100 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 평방미터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평방미터이상)인"을 "200 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평방미터이상)인"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을 "600 평방미터이상인 것은 전층"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 평방미터 이상인 것.

제 18 조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피난구유도동 통로유도동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구분	유도동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정거장·대합실·학예전시관·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대형피난구유도동(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동
나. ○강습소		중형피난구유도동(또

제 18 조제 5 호 다목중 "600 평방미터이상인 것"

○가목외의 제 2 종장소의 지하 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는 중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다. 사업장·교회 및 사찰	소형피난구유도등(또 는 소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라. 기타의 제 2종장 소	소형발광유도표지 또 는 축광유도표지

제 18 조에 제 10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 2.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
상물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기타의 통로. 다만, 학교 및
공동주택의 거실을 제외한다.

제 19 조제 2 호 다목 및 제 6 호 다목중 “이상인
것”을 각각 “이상인 것은 전층”으로 하고, 동
조 제 6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
미터이상인 것.

제 19 조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형피난구유도등(또는 중형발광유도표
지) 및 통로유도등은 지하층·무창층 및 11
층이상의 층에,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
광유도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21 조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6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은 모든 지하가(터널을 제외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의 2.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
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
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기타의 통로

제 2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2 조(복합건축물) 별표 1 의 복합건축물(제

15 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소
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용도의 시설기준
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용도외의 부분이 제
17 조 내지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
별 기준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시
설기준을 적용한다.

제 3 장에 제 4 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절 소방시설의 점검 및 보고

제 24 조 2 (점검대상) 법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
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 의 특수장소중 스프링클러설비·물
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배연설비가 설치된 소
방대상물
2.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제 1 호의
소방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제 24 조 3 (점검결과와 보고등) 법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횟수 및 결과보고
기타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
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25 조의 제목“(제조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대
상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제조업허가대
상인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 34 조제 1 항 및 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
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을 “법 제 3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업허가를 받아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으
로 한다.

제 25 조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호
괄호중 “소화약제 및 할로겐화물소화약제를”
을 “소화약제·할로겐화물소화약제 및 화학
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로 하며, 동조 제 8 호
괄호중 “압력검지장치” 다음에 “일제개방밸브”
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 1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및 소화기 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을 제외한다)

12. 방열복

제 5 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장 소방설비공사업등

제 27 조(면허의 기준) ①법 제 4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장비 및 공사실적은 별표 5와 같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법 또는 다른법에 의한 업종별 및 법인별로 각각 별개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고, 재산의 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 28 조(도급한도액산정등) ①법 제 42조의 7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에 소방설비공사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부가가치세에 의한 공급가액의 연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 1항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한다.

③ 2 이상의 소방설비공사사업자가 1건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경우에는 각 소방설비공사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 도급한도액의 공고일전일까지로 한다.

⑥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소방설비공사사업자는 매년 전년도에 소방설비공사실적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소방설비공사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그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28 조의 2 (도급계약의 해지) 법 제 42조의 9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은 당해 소방설비공사사업자로부터 그 면허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8 조의 3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구분) 법 제 42조의 11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자격구분에 따라 그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소방시설의 경미한 정비시공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8 조의 4 (소방설비기사의 신고등) ①법 제 42조의 1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때마다 그 취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소방설비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 42조의 12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법 제 42조의 5 제 1호 내지 제 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경우

3. 자격증 또는 신고필증을 다른사람에게 대하여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 33 조 및 제 34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4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3 조(제조소) ①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한다)을 한 곳을 말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시설은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제 34 조 2 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말한다.

제 34 조(취급소)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주유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2. 판매취급소

가. 제 1 종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5 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제 1 종 판매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나. 제 2 종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지정수량 5 배이상 20 배미만(단 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취급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 이하의 지역의 경우에는 35 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제 2 종 판매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3. 일반취급소 : 위험물제조소 및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거나, 버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 일 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일반취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제 3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을 한 취급소

제 34 조의 2 (저장시설의 구분)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옥내저장시설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2.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 5 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6. 이동탱크저장시설 :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7. 옥외저장시설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2 의 제 2 류 위험물중 유황, 제 4 류 위험물중 제 2 석유류·제 3 석유류·제 4 석유류·동식물유 또는 제 6 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8. 선박탱크저장시설 : 선박(선박안전법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 또는 부선안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제 3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7 조의 2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지사는 위험물의 품목·수량·저장 및 취급방법과 주위의 상황을 판단하여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장 제 3 절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장 제 4 절 및 제 5 절을 삭제한다.

제 3 절 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자체소방조직

제 39 조(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 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을 가진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조시설 및 일반취급시설을 제외한다.

1. 보일러·버너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시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시설
3. 철제드럼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 취급시설
4. 압유장치·윤활유 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시설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
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

제 40 조(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 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지정수량 30 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시설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곳을 제외한다), 지정수량의 15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시설, 지정수량의 200 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또는 지정수량의 100 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시설을 가진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제 41 조(자체소방조직의 편성) ①법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소(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표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그 조작인원을 가지고 각각 편성된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조작인원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 만배 미만인 사업소	1 대	5 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 만배 이상 24 만배 미만인 사업소	2 대	10 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 만배 이상 48 만배 미만인 사업소	3 대	15 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 만배 이상인 사업소	4 대	20 인

②제 1 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 1 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0 장을 제 12 장으로, 제 9 장을 제 11 장으로, 제 8 장을 제 10 장으로 각각 하고, 제 8 장 및 제 9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장 청 원 소 방

제 42 조(청원소방원의 배치등) ①법 제 68 조의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 청원소방원이 배치된 경우로서 조직적인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소방대를 편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43 조(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르는 경비등)

①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소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2. 청원소방원의 피복비
3. 청원소방원의 교육비
4.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5. 기타 청원소방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제 1 항제 1 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부담기준액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청원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④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44 조(청원소방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소방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18세미만인 자
5.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의 기피사실이 있는 자
6. 신장 160센치미터 미만이거나 체중 50킬로그램 미만인 자 또는 팔·다리의 활동이 완전하지 못한 자.

제 45 조(복 제) ①청원소방원은 근무중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청원소방원의 복제 및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 46 조(교 육)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미리 소방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 47 조(청원소방원의 직무등) ①청원소방원은 청원주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 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업무의 보조
2. 법 제 1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주임업무의 보조
3. 법 제 49조제 1항의 구정에 의한 소화, 연소의 방지 및 인명구조 작업
4.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②청원소방원의 배치·해임·보수·교육 및 근무감독등의 운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장 구 급 업 무

제 48 조(구급대의 편성) ①법 제 70 조의 10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기준은 법 제 69 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소방력기준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간호 및 구급에 대한 강습을 받은 자
3. 간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 및 구급 과정을 수료한 자

제 49 조(의료기관의 지원) 법 제 70 조의 10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57 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자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동조 제 1 호·제 2 호 및 제 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 42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법 제 42 조의 1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소방설비기사

제 6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3 조(권한의 위임) 법 제 70 조의 11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4 조·법 제 35 조·법 제 37 조·법 제 42 조의 2·법 제 42 조의 3·법 제 42 조의 6·법 제 42 조의 7 및 법 제 42 조

의 12 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법 제 15 조·법 제 17 조·법 제 20 조·법 제 22 조 및 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 64 조”를 “제 65 조”로 하고, 제 6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4 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 78 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법 제 7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 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의 비교란 제 3 호라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별표 비교란에 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 리터이하의 불연성용기에 수납 밀전하여 지정수량미만의 양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 도료류 기타 품명이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에 속하는 위험물의 품명과 그 지정수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 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관한 제17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일체개방밸브 및 방열복의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장소의 침구류방염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제1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침구류의 방염처리를 1985년 12월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피난기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제17조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와 제17조제13호·제18조제10호·제19조제10호 또는 제21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형피난구유도등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의 설치를 1985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1.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중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을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로 한다.

2. 건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일반공사란 제2호 건축공사의 내용중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 및 소방시설을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를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를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특수장소(특수소방대상물)

종별	용도별	비고
제1종 장소	○공연장 :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장소 및 그러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 ○경기장 : 공중이 운동이나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이를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건축물 ○집회장 : 회의·사교등을 목적으로 공중이 집회할 수 있는 건축물 ○음식점 : 음식물 또는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행하는 건축물 ○유기장 : 대중오락을 위한 유기등의 시설을 갖춘 건축물 ○시장 :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극장·영화관·연예장등 각종경기장(탁구장·보울링장·실내골프장등)·체육관등 공회당·시민홀·예식장·노동회관등 대중음식점·전문음식점·유흥음식점(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등)·과자점·다방·휴게실 당구장·기원·댄스교습소·실내사격장·전자유기장등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백화점·슈

종 별	용 도 별	비 고
제 1 종 장 소	<p>공급자가 모여서 물품의 매매 교환을 행하는 건축물</p> <p>○여 관 :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보통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p> <p>○호 텔 :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고급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이나 휴양지의 숙박시설</p> <p>○여인숙 : 숙박하는 장소를 두고 다수인이 공용하게 하는 구조 및 설비로서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p> <p>○기숙사 : 관공서·학교·회사등에서 종업원·학생등을 집단적으로 거주시키기 위한 건축물</p> <p>○의료원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건축물</p> <p>○노인복지시설 : 노인에 대하여 급식·치료·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p> <p>○아동복지시설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p> <p>○심신장애자복지시설 : 심신 장애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거나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p> <p>○유치원 : 미취학아동을 수용하여 조직적인 유희활동을 시켜 그 성장발달을 도모하게 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p> <p>○공중목욕장 : 공중으로 하여금 목욕 또는 수영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운동 및 위락 시설을 포함한다)</p>	<p>우퍼마켓·쇼핑센터</p> <p>콘도미니엄</p> <p>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p> <p>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회관등</p> <p>아동상담소·보육시설·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아동휴양시설등</p> <p>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시각장애자 재활시설·청각, 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정신박약자재활시설·심신장애자요양시설·심신장애자근로시설·점자도서관</p> <p>○일반목욕탕(공동탕·가족탕)</p> <p>○특수목욕탕(한증탕·터키탕)</p> <p>○실내수영장</p> <p>○안마시설소</p>
제 2 종 장 소	<p>○정거장 : 기차·자동차·선박·항공기등이 정차·정박 또는 계류하는 시설</p> <p>○대합실 : 기차·자동차·선박·항공기의 여객의 대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p>	<p>터미널, 선박·항공기의 발착장</p>

종 별	용 도 별	비 고
제 2 종 장 소	<p>○교회·사찰 :종교상의 예배를 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집합하는 건축물</p> <p>○4층이상의 공동주택 :다수인의 세대가 거주하는 시설로서 대지·복도·계단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p> <p>○학 교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p> <p>○학예전시관 :도서·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공하거나 역사·예술·산업·자연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여 공중의 관람에 공하는 건축물</p> <p>○강습소 :다수인에게 강의·강습등을 할 목적으로 그 시설을 갖춘 건축물</p> <p>○사업장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 또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일정한 시설 및 건축물</p> <p>○공 장 :기계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개조·가공·수리·포장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근무하는 시설 및 건축물</p> <p>○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영화 또는 텔레비전을 촬영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p>	<p>아파트</p> <p>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p> <p>학원·예·체능계 강습소·시설강습소·태권도장·헬스클럽장·독서실 등이 표에서 열거한 것 및 축사를 제외한 판공서·회사·은행·이발소·미장원·화장장·오물처리장등</p> <p>방송시설등</p>
제 3 종 장 소	<p>○창 고 :물품의 멸실·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을 격납하는 건축물</p> <p>○차고·주차장 :주차하기 위한 시설 및 건축물</p> <p>○비행기격납고 :비행기를 격납하는 창고</p>	화물터미널등
지 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	지하상가·터널(궤도차량용 제외)
복 합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제 1종장소 내지 제 3종 장소에서 정한 용도가 2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 (다만, 1개의 건축물에 주된 용도이외의 종된 부속용도가 건축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복합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